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	2368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4월 28일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회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오현정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 번호:제2263호)과 이광성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2264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사유

- 현재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,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시험비용과 재설치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시장이 부담하고 있음.

그러나 수도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시험하는 수도계량기의 경우 약 84%가 정상으로 판정되고 있고, 무분별한 시험요청으로 인해 만기 및 고장 교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

의 비용을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.

- 현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는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용자등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, 대부분의 계량기 동파는 보온상태 부실 등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량기 관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나 자연재해로 파손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에 드는 비용에 대해 그 일부를 수도사용자등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수도계량기가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- 나.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도록 함(안 제42조제2항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계량기의 시험)”을 “(수도계량기의 시험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제3항의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2조의 제목 “(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)”을 “(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수도계량기”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”로, “시의 부담으로”를 “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”를 “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”로 한다.

- ①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, 분실 등이 되었을 경

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
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行	개 정 안
제20조(<u>계량기의 시험</u>) ① ~ ② (생 략)	제20조(<u>수도계량기의 시험</u>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.</u> <u>다만,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제3항의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
제42조(<u>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</u>) ①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.	제42조(<u>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</u>) ①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,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② <u>수도계량기가 자연 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.</u> 다만,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,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<u>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.</u></p> <p>③ (생 략)</p>	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----- 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-----.</u> <u>----- 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